공고 제 50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28일

가정3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변 *진	변 *진 1980-10-30	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79번길 (가정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2-12-16